

# 한 · 아세안 FTA 11차협상에서 상품협상 타결

## 1. 협상경위

- 2005년 2월 1차협상 이후 11차례 협상 진행
- 2005년 12월 양측 정상간에 관세인하방식 합의
  - 현행관세유지, 관세 일부 감축 등 관세철폐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초민감 품목 200개 확보(HS 6단위)
  - ‘품목단체농업통상자문회의’ 자문을 거쳐 민감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(200개중 농산물이 170여개) 관세인하계획 확정, 협상대응
- 한 · 아세안 FTA 11차협상에서 상품협상 타결
  - 농산물 양허제외 40개(HS 6단위), 10년간 양허제외 후 1/5축소 117개 품목 등 초민감품목 200개 반영
  - 5월중순 양측 경제장관회담시 서명
- 상품협정에 대하여 하반기 국회비준 요청 전망
  - 국회비준 후 2007년부터 상품협정 발효 전망
- 서비스 · 투자분야는 현재 협상중이며 연말까지 타결 목표

## 2. 농산물 관세인하계획 타결 내용

- 초민감품목
  - 현행관세가 50%미만이므로 양허제외된 A품목 5개 및 현행관세유지품목 E를 합하여 총 40개 농산물을 현행관세유지(양허제외)
  - 대부분의 민감농산물(117개)은 10년동안 양허제외 후 관세의 1/5만 소폭 감축하는 B로 배치하여 민감성 최대한 확보
  - 보리, 오렌지 주스 등 23개 품목은 10년 후 관세 1/2 감축
  - 강낭콩, 메니옥은 아세안 수입량의 절반수준을 TRQ로 주는 대신 일반관세는 현행을 유지기로 함

세부 항목	주요 품목 (관세율)
<b>【Group A】</b> (2016년까지 관세율 상한 50% 설정)	[농산물] 치즈(36%), 오렌지(50%), 사과 · 배(45%) [수산물] 새우젓(55%),
<b>【Group B】</b> (2016년까지 20% 만큼 관세감축)	[농산물] 감자(30.4%), 단옥수수(37.0%), 고구마(38.5%), 땅콩(23.05%), 백삼(22.8%), 인삼 · 홍삼(75.43%), 참깨 · 참기름(63.0%), 돼지고기(18~25%), 쇠고기(18~40%), 닭고기(18~22.5%), 밀크 · 크림 · 분류 등 유제품(36~176%), <b>꿀(243%)</b> , 화훼(25%), 밤 · 대추 · 잣(30%), 망고 · 망고스틴(30%) 등

<p><b>【Group A】</b> (2016년까지 관세율 상한 50% 설정)</p>	<p>[수산물] 김·미역(20%), 꽃게·기타게(14~20%), 수산가공품(20%), 오징어(10~27%) 등 [임산물] 합판·섬유판·파티클보드(8% 또는 13%)</p>
<p><b>【Group C】</b> (2016년까지 50% 만큼 관세감축)</p>	<p>[농산물] 기타 전분·가공곡물(126~800.3%), 글루우(201.2%), 과일주스(54%) 등</p>
<p><b>【Group D】</b> (TRQ 설정)</p>	<p>[농산물] 매니옥(45%, 455%, 또는 887.4%), 강낭콩(27%), [수산물] 새우(20% 또는 27%), 갑오징어(10%)</p>
<p><b>【Group E】</b> (양허제외)</p>	<p>[농산물] 쌀(관세화 유예), 마늘(360%), 양파(135%), 고추(270%), 감귤류(144%), 녹차(513.6%), 바나나(40%), 파인애플 (30%), 돼지고기(22.5~25%), 쇠고기(40%), 닭고기(18~27%) 등 [수산물] 냉동 민어(70%), 돔, 넙치, 갈치, 삼치, 조기, 콩치 등(활어 10%, 신선·냉장 20%, 냉동 10%), 어류통조림 등 [임산물] 섬유판(8%)</p>

- 일반민감품목
  - 기타 가공농산물 등 103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10년동안 현행관세를 유지하다가 관세를 5%p미만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합의

### 3. 원산지 협상 타결 내용

- 01류~14류 : 완전생산기준
  - 육류, 화훼류, 양념류, 채소류, 과일류, 곡물류 등 신선 농산물은 아세안 역내에서 기르거나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인정
- 15류~24류 :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40% 기준
- 04류, 14류 : 완전생산기준 또는 부가가치 45% 기준
  - 우유, 요구르트, 치즈, 햄 등 일부 낙농품 및 육가공품, 조제식료품 등은 제3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경우 부가가치가 최소한 40% 이상 충분히 발생하면 원산지를 인정, 부가가치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으면 원산지 불인정
  - 기타,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아세안 측이 주장하는 원산지 기준 일반 원칙을 수용하되, 참기름, 고추장, 김치, 인삼·인삼가공품 등 전통식품은 원산지 기준을 강화
- ※ 아세안측 원산지 기준 일반원칙도 FTA 체결 이전 적용되는 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기준임
- 수출시 정부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중국, 인도, 호주 등 제3국산 농산물이 아세안을 경유하여 우회 수입되는 경우 관세감축이나 관세철폐의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하였음

